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강의실·사무실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의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전용강의실 (1) 이론강의: 1명당 1㎡ 이상 (2) 실기연습: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1명당 2㎡ 이상 ※ 통합강의실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말한다.
교구 보관시설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 밖의 시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 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추는 것

- 1) 수시용품: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등
- 2) 염습용품: 수의 등
- 3) 입관용품: 관, 관보, 결관바 등
- 4) 영좌용품: 영정, 교의 등
- 5) 상주용품: 남상복, 여상복, 두건, 완장 등
- 6) 그 밖의 용품: 조등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는 것

3. 인력기준

구분		수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교수 요원	전임	교육인원 40명당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대학교에서 장래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교양과목은 제외한다)을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 나. 장래,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장래,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래 관련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	필요한 수	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래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 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한다.